

光州廣域市西區廢棄物綜合處理센터造成特別會計設置條例案

審 查 報 告

1996年 9月

社會都市委員會

1. 審査經過

가. 提出日字 : 1996年 9月 5日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提出
및提出者

나. 回附日字 : 1996年 9月 5日

다. 上程日字 : 第58回 西區議會(臨時會) 會期中
第3次 社會都市委員會(1996年 9月 16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清掃行政課長 吳 龍 洙)

가. 提案 事由

○ 서구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통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제2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비용의 부담금과 국·시비 보조금, 기타로 하며
- 제3조(세출) 세출내역은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 사업비와 주민 지원사업비 등입니다.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金光泰)

- 본 특별회계조례 설치 입법근거인 폐기물처리시설축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시행령 제4조제8항의 내용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비용 부담금을 「목적외 사용금지」라는 입법 취지이며,
- 덧붙임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과 예산회계법 제9조 제2항 및 '9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71, 83Page)에 의하면 본 조례는 특별회계가 아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특히 본 조례 제2조(세입) 제1, 2항의 국·시비 보조금의 특별 회계 수입금 처리는 국·시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시책상 필요한 장려적 보조금으로서 사용 목적이 뚜렷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 회계년도 내에 사용하여야 할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임.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략

5. 討論 要旨 : 생략

6. 審査 結果 : 원안 가결

7. 少數 意見 要旨 : 없음

8. 其他 事項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제4조 제8항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가 시행하는 폐기물종합처리센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종합처리센타 조성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세입)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고보조금
2. 광주광역시보조금
3. 타 회계 전입금
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비용의 부담금
5. 기타수입

제 3 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1. 폐기물종합처리센타 조성사업비
2. 주민지원사업비
3. 기타 회계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제 4 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5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